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규칙

제 정 2013. 01. 15

개 정 2015. 12. 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후생복지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임·직원의 후생, 휴양,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 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연구원 소속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직원
2.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직원(중징계)
3. 직위 해제된 직원

제5조(운영원칙) ① 원장은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

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원장은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임·직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차등포인트(근속, 가족 등)로 구분하여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 단련실
3. 직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제8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원장은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효행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 등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3. 직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4. 정년· 명예퇴직 직원의 격려금 지급
5.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6. 기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 원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12.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